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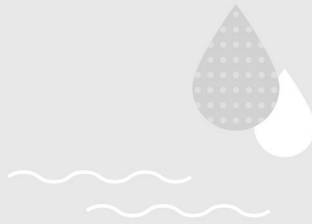
물 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물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C H A P T E R

0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단원 체크포인트

01 접근 방법 및 이 법의 체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재의 조사를 통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재조사를 언제 실시하고, 어떤 화재 대상에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와 화재조사관 등에 관한 내용 및 화재조사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조사는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등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그 외에 화재조사와 관련된 절차로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 조치 또는 통제구역의 설정을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의 입증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끝으로 벌칙규정을 두어 의무 위반의 유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2 출제 경향이 높은 부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새롭게 제정되어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지만, 기존의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재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소방기본법에서 출제된 화재조사 관련 내용이 중요하고, 그 외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 중 출제 가능한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서는 이 법의 제정 목적조항부터 벌칙조항까지 고루 출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출제의 경향이 높은 부분과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재, 화재조사, 화재조사관, 관계인등의 용어의 정의
- ② 화재조사의 실시시기
- ③ 화재조사의 대상
- ④ 화재조사사항
- ⑤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정밀조사, 화재조사 결과 보고 등 화재조사의 절차
- ⑥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수행업무
- ⑦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 ⑧ 화재현장 보존조치 또는 통제구역의 설정
- ⑨ 벌칙의 내용 구분



01

총칙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1) 화재**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및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①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 ②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 ③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 ④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5) 그 외의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인등의 책무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법 제5조)

(1) 화재조사의 실시시기 및 대상

① 화재조사의 실시시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재조사의 대상(시행령 제2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나.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2) 화재조사사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①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②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③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⑤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사항(시행령 제3조 제1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임규정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화재조사의 절차(시행령 제3조 제2항)

화재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현장출동 중 조사 :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 ② 화재현장 조사 :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 ④ 정밀조사 :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 ⑤ 화재조사 결과 보고

(5) 업무의 협조(시행령 제3조 제3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화재조사전담부서(법 제6조)**(1)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①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시행령 제4조)

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나.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4조 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조).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시행규칙 별표)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연마기), 전동 드라이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전동 절단기
기록용 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정기, 디지털온도·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감식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용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디지털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구), 내시경현미경
감정용 기기(21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물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유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전기단락흔실험장치[1차 용융흔(鎔融痕), 2차 용융흔(鎔融痕), 3차 용융흔(鎔融痕) 측정 가능]
조명기기 (5종)	이동용 발전기, 이동용 조명기, 휴대용 랜턴, 헤드랜턴, 전원공급장치(500A 이상)
안전장비 (8종)	보호용 작업복, 보호용 장갑, 안전화, 안전모(무전송수신기 내장),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 조끼
증거 수집 장비 (6종)	증거물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증거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세트(번호, 스티커, 삼각형 표지 등), 증거물 태그 세트(대, 중, 소), 증거물보관장치, 디지털증거물저장장치
화재조사 차량 (2종)	화재조사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산업용 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6종)	노트북컴퓨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 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의복(활동복, 방한복), 화재조사용 가방
화재조사 분석실	화재조사 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고, 환기 시설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 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가공물 고정을 위한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건조기,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보존기)

비고

1. 위 표에서 화재조사 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화재조사 전용 의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의복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화재조사 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전담부서의 수행업무

전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 ②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 ③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④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시행규칙 제2조)

- ① 화재조사전담부서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3) 화재조사관

① 화재조사 업무의 수행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관의 자격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시행령 제5조)

- ①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 ②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시행규칙 제4조)

- ①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일시·장소 및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③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시행령 제6조)

가. 소방관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 ㉡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 ㉢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나.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위의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시행규칙 제5조)

- ① 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특이 화재조사, 감식·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④ 위의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의 위임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화재합동조사단(법 제7조)

(1)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소방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2) 위임규정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시행령 제7조 제2항~제7항)

① 단원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가. 화재조사관
- 나.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 그 밖에 건축·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파견요청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화재합동조사단의 결과보고사항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나. 화재조사 개요

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화재조사사항)

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마.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바.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경비의 지급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위임규정

위의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화재현장 보존 등(법 제8조)

(1) 화재현장 보존조치 또는 통제구역의 설정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시행령 제8조)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

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2) 통제구역에의 출입금지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의 이동·변경·훼손의 금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의 위임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등(시행령 제9조)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 ①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 ②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출입·조사 등(법 제9조)****(1)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조사·질문**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화재조사관의 증표제시의무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화재조사관 증표(시행규칙 제6조)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3) 업무방해, 비밀누설금지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관계인등의 출석 등(법 제10조)**(1) 관계인등의 소방관서에서의 출석 및 질문**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2) 위임규정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시행령 제10조)

- ① 소방관서장은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가. 출석 일시와 장소
 - 나. 출석 요구 사유
 - 다.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계인등은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법 제11조)

(1) 증거물의 수집·검사·시험·분석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시행령 제11조)

-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장은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시행규칙 제7조)

-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 ②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 ③ 위의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의 위임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법 제12조)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①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③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소방관서장의 통지 및 증거 수집·보존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관계 기관 등의 협조(법 제13조)

(1) 협력의무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정보의 요청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법 제14조)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의 위임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시행규칙 제8조)

-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법 제15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화재증명원의 발급(법 제16조)

(1)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및 발급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 등의 위임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시행규칙 제9조)

-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 ②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법 제17조)

(1)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시행령 제12조)

- ① 감정기관의 지정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
 - 다. 증거물의 감식·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 가. 주된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추는 것
- ②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비용의 지원

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감정기관 지정의 취소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기관 지정의 취소사유(시행령 제13조 제3항)

감정기관 지정의 취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4) 청문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의 위임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①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라.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지정이 취소된 화재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 ④ 위의 사항 외에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제10조)

- ① 영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 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②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 제13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 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⑤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 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감정의뢰 등(시행규칙 제11조)

- 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감정 결과의 통보(시행규칙 제12조)

- 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②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 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 다)를 보존해야 한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18조)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 관련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법 제19조)

(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위임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시행령 제14조)

- ① 소방청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법 제20조)

(1)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① 국공립 연구기관
-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3)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소방청장은 위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16조)

-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 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05

벌칙

1 형벌(법 제21조)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8조 제3항(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의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의 이동·변경·훼손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한 사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소방관서장의 명령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조사·질문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③ 제9조 제3항(화재조사관의 업무방해, 비밀누설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소방관서장의 증거물수집·검사·시험·분석)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양벌규정(법 제2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태료(법 제23조)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제8조 제2항(통제구역에의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 ②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소방관서장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석(관계인등의 소방관서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시행령 제17조 제1항)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줄여 부과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만,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00	15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00	150	200

임 현

- 약력**
-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1차 합격
 - 現 소방아카데미 소방관계법규 전임 교수
 - 現 경기소방학원 소방관계법규 전임 교수

- 저서**
- 물 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에프엠)
 - 이것으로 기출정리 끝 최신8년간 소방관계법규 기출의 재구성(에프엠)
 - 최종점검 실전동형모의고사(에프엠)

2023 물 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추록)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초 판 인 쇄 2022년 6월 23일
초 판 발 행 2022년 6월 28일
편 저 자 임 현
발 행 인 김용한
등 록 제319-2012-22호
발 행 처 에듀에프엠
주 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217-43(202호)
교 재 문 의 TEL) 02-6004-5476 / FAX) 02-822-2320
학 습 문 의 www.edufm.net

본서의 무단 전재·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각합니다.

비매품

